



# 백양골 소식

2018년  
4월

■ 제 478호 ■

발행인:장성군수/편집인:총무과장/제작:총무과/☎ 390-7231/FAX 390-7579/jangseong.go.kr/2018.4.2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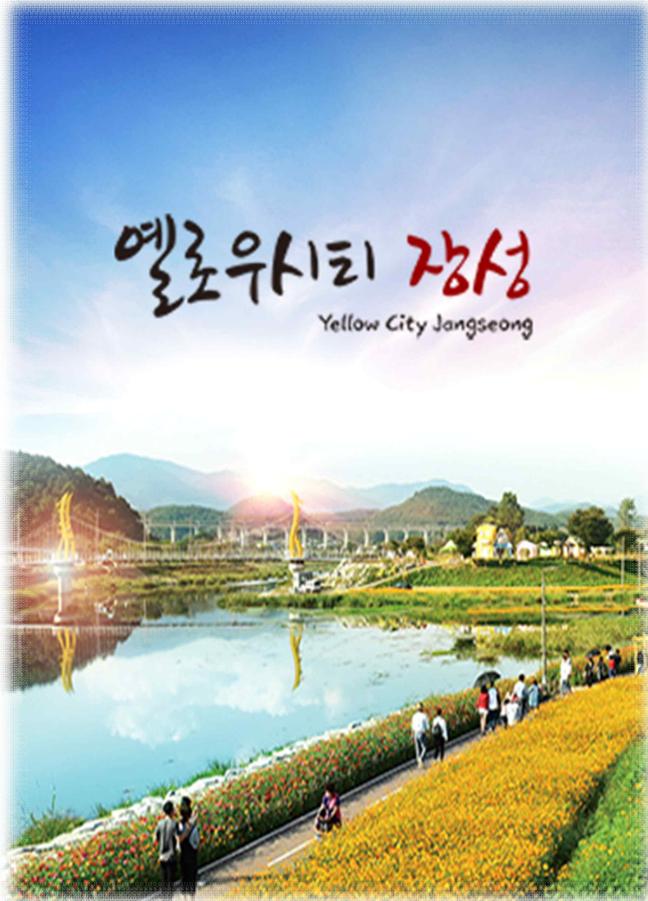
## 제19회 전남 장성

The 19th  
2018 Jangseong  
Hong Gildong  
Festival



KBS 전국노래자랑 5. 19(토) 오후 1시 본선 녹화

황룡강 봄꽃 상춘객 맞이  
5.18 ~ 27(10일간)



# 예로우시티 장성

Yellow City Jangseong

## [일반행정 소식] 3

1. 제19회 장성 흥길동축제
2. 2018년 장성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3.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4. 2018년도 저울 정기검사 실시
5.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6. 2018.1.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보건복지 소식] 9

1. 소중한 내아이 ‘아이돌보미’ 가 함께합니다
2.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실시
3. 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실시

4.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5.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6.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7. 치매조기검진사업 전수조사 실시
8.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 [농축산 소식] 15

1. 농촌인력지원센터 안내
2.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3. 철저한 뱀씨종자 소독으로 키다리병을 예방합시다
4. 쌀 적정생산을 위한 3저(低) · 3고(高) 실천운동
5. 과수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방제약제 신청하세요

## [유관기관 소식] 20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분소 개소
2. 2018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3.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등 관련 주요 위반사례
4.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5. 거소투표 신고 안내
6.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국도정 소식] 27

1. 새학기 부정청탁금지법 Q&A
2. 진술조력인, 아동·장애인의 인권도우미

## 제19회 장성 홍길동축제

### □ 제19회 장성 홍길동축제

- 일 시 : 2018. 5. 18.(금) ~ 5. 20.(일) / 3일간
- 장 소 : 황룡강변(공설운동장) 및 홍길동테마파크
- 주 제 : 길동이와 함께하는 황룡강의 봄
- 주요행사 : KBS 전국노래자랑, 공연·체험·전시·홍보 등
- \* 축제 이후 「황룡강 봄꽃 상춘객 맞이」 7일간 운영[ ~ 5.27.(일)]

### ※ KBS 전국노래자랑

#### ▶ 방송녹화

- 일 시 : 5. 19.(토) 13:00 ~ 15:00
- 장 소 : 공설운동장 건립부지(장성읍 기산리 실내수영장 옆)
- 진 행 : 사회자(송해), 초대가수(박상철, 김혜연, 우연이, 박정식, 손빈)

#### ▶ 예심접수

- 접수기간 : 4. 18.(수) ~ 5. 15.(화) / 28일간
-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舊 읍·면사무소), 문화관광과
- 참가자격 : 장성군민 누구나  
(관내 소재 사업자, 직장인, 학생, 군인 등)
- 접수 방법 : 방문, 전화, 팩스(061-390-7577), 이메일(js307160@korea.kr)
- \* 예심일 및 장소 : 5. 17.(목) 13:00 ~ 18:00, 장성문화예술회관

문의처 ☎ 390-7242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 2018년 장성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 목 적

-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골든타임 내 초동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실행기반훈련 실시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훈련을 통해 군민 스스로의 재난대처능력 향상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안전한 장성 실현

### □ 훈련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기 간 : 2018. 5. 8.(화) ~ 5. 18.(금) / (2주간)
- 현장훈련
  - 일 시 : 2018. 5. 15.(화) 15:00
  - 장 소 : 시일건강타운 (북하면 백양로 445)
  - 참여기관 : 13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소방차 등 차량 20대
  - 훈련내용 : 요양원 화재사고 대응 현장훈련
  - 주 관 : 장성군



문의처 ☎ 390-7019 (재난안전실 안전총괄담당)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 부과개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책임보험 만료일 전 보험에 가입하여야 자동차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 및 운전자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거법령 [1963년4월 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제40조, 제41조, 동법 제48조 3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7조,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 과태료 부과 기준

#### ① 자가용인 경우

- 보험가입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 익일 일요일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월요일날 가입하더라도 일요일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적용 대상
- 보험가입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 익일 월요일은 보험가입이 가능하기에 과태료 적용 대상이 아님

#### ②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 무조건 과태료 적용됨

#### ○ 과태료 산정 내역(※ 대인대물보험은 동시가입 해야 함)

미가입 기 간	대인보험 미가입				대물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1)	대인배상(2)			
10일 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 초과 매1일 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8,000원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 금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 자가용 10일 이내 미가입시 : 대인 10,000 + 대물 5,000 = **15,000 부과** - 10일 이후 1일당 6천원씩 누적됨

※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과태료 산정: 10일 이내 65천원, 10일 이후 1일당 18천원씩 누적됨

###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보유자가 적발 시 행정처분

구 분	처 분 사 항	비 고
이륜차의 경우	범칙금 100,000원	범칙금 미납부 시 관할 경찰청에 사건 송치됨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400,000원 ~ 500,000원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1,000,000원 ~ 2,000,000원	

###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

구 분	상 세 내 용
대 상	자동차보유자가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 해외체류, 질병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입영,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절 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서류 제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교부받음
신청방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문의처 ☎ 390-7372 (경제교통과 차량등록담당)

## 2018년도 저울 정기검사 실시

### □ 사업개요

- 검사대상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 검사주기 : 2년에 한 번씩 실시
- 검사공고 : 2018. 4. 16. ~ 4. 30.(15일간)
- 정기검사 : 2018. 5월중 실시(장성군청 홈페이지 공고 내용 참조)
- 정기검사 면제
  - 정기검사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고 그 결과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 소재장소 정기검사 대상
  - 저울이 토지 또는 건물 등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할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을 소재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 □ 참고사항

-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및 제52조 기준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390-7353 (경제교통과 경제정책담당)

2018년 1월 1일 기준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8. 4. 13. ~ 5. 2.
- 장 소 :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대 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열람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
- 지가열람 방법
  - 방문열람 :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화열람 :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 ☎061)390-7691~2
    -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열람 : 군청 홈페이지
- 의견제출 방법
  - ☞ ㎡당 토지가격 열람 후 토지가격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유와 적정가격을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
    - 방문제출 : 군 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 작성
    - FAX제출 : 장성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전송

문의처 ☎ 390-7691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 2018.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 개별주택가격은 장성군수,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공시
- ▶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 및 이의신청 개요

#### ○ 열람장소

- 개별주택 : 장성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kais.kr](http://www.kais.kr)),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 이의신청 대상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 이의신청 기 간 : 2018. 4. 30 ~ 5. 29

#### ○ 이의신청서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공동주택 : 인터넷 접수 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한국감정원 광주지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 관련 문의처

- 개별주택가격 : 군청 재무과(390-7281)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가격 : 한국감정원 광주지점(전화 062-953-1300/팩스 062-953-1133)

문의처 ☎ 390-7281 (재무과 부과담당)

## 소중한 내아이 ‘아이돌보미’ 가 함께합니다!

### □ 아이돌봄지원 사업이란?

-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로,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 □ 서비스 유형

- 시간제 돌봄
  - 대 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내 용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 지원 시간 연간 600 시간 이내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종일제 돌봄
  - 대 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내 용 :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 지원 시간 월120~200시간 이내
    - 보육교사형 :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가 보육서비스 제공

### □ 서비스 내용

- 시간제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급식 및 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등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 (단, 가사활동제외)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단, 가사활동 제외)

### □ 서비스 이용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지참
-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392-0211 (장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실시

### □ 추진계획

- 단속기간 : 2018. 4. 25. ~ 5. 28.
- 단속대상 :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사범
- 단속지역 : 7개시·군(장성, 나주, 화순, 담양, 곡성, 영광, 광주광역시)
  - 양귀비 · 대마 적발지 및 밀경작 우려지역을 집중 단속
- 단속방법 : 광주지방검찰청 및 시·군 보건소 공무원 합동 단속
- 적발자 처리
  - 재배의 경위, 목적, 재배량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처벌
    - ※ 양귀비의 경우 검찰청 설정 기준에 의거 조치
      - 50주 미만 : 불입건
      - 50주 이상 ~ 100주 미만 : 기소유예
      - 100주 이상 : 기소
  - 양귀비 대량 재배자 및 대마 재배자는 구속 수사함

### □ 마약 양귀비와 꽃양귀비 구별법



#### 마약 양귀비

- 꽃대에 솜털이 없음
- 열매에 상처를 냈을 때 하얀진액이 나옴
- 잎이 넓고 톱니 모양

#### 꽃 양귀비

- 온 몸이 솜털로 덮여있음
- 열매에 상처를 내도 진액이 나오지 않음
- 잎이 가늘고 깃털모양

문의처 ☎ 390-8331(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실시

### □ 접종안내

- 기 간 : 연 중
- 대 상 자 : 만 12세 여성청소년('05 ~ '06년 출생)
- 접종기간 : 연중 (매주 월 ~ 금요일 09:00 ~ 15:00)
- 접종비용 : 무 료
- 접종횟수 : 2회(6개월 간격)
- 접종효과 :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70% 예방

### □ 관내 접종시행 의료기관

- 공공의료기관(10개소) : 보건소 1, 보건지소 9
  - 민간의료기관(4개소) : 전대가정의원, 한솔의원, 세브란스의원, 참사람의원
-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접종가능

문의처 ☎ 390-8332,8337(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기 간 : 2018. 4. 1.(일) ~ 6. 30.(토)/3개월간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 등 신고
  - 자수자처리 :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 ※ 상담·신고전화 :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 (061-289-2473)

문의처 ☎ 390-8331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한도
- 신청절차 : 보건소로 신청 ⇒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수술 및 지원
- 지원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문의처 ☎ 390-8340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대상질환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 신청절차 : 보건소로 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수술 및 지원
- 지원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문의처 ☎ 390-8340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 치매조기검진사업 전수조사 실시

### □ 치매조기검진사업 전수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대 상 : 만60세 이상 관내주민
- 검진장소 : 보건지소, 진료소, 기관·단체, 전 등록 경로당 등
- 조사내용
  - 치매선별검사, 치매상담 및 교육, 치매예방수칙 333, 노인우울증 검사 등
- 검사방법
  - 1차 : 서면검사(치매선별검사)
  - 2차 : 인지저하자 ⇒ 진단 및 감별검사 시행

### □ 치매진단, 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 등 지원

-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지원
  - 대 상 :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자
  - 검진협약병원 :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장성병원
  - 내 용 : 신경인지검사, 우울검사, 의사진료, 혈액, 소변검사, CT검사
  - 지 원 액 : 진단검사(8만원), 감별검사(8만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 치매환자 등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자
  - 지 원 : 월 3만원까지(연36만원) 본인 실비지원(진료비+약제비)
  - 신청서류 : 치매치료비지원 신청서, 약처방전, 소견서 및 진단서, 건강보험증, 본인통장
- 조호물품 지원
  - 대 상 : 관내 등록된 치매환자 / 지 원 : 영양제, 기저귀, 물티슈 등

문의처 ☎ 390-8374(보건소 진료재활담당)

##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 ◇ 4월 9일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확인
- ◇ SFTS 예방의 최선은 진드기 물림 예방수칙 철저히 준수
- ◇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구토 등의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 <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 ○ 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피해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 작업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문의처 ☎ 390-8374(보건소 감염병대응담당)

## 농촌인력지원센터 안내

### □ 농촌인력지원센터란?

-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인근 농촌의 초기 귀농자, 지역민 및 도시의 구직자를 중개수수료 없이 연계하여 주는 곳임
- ※ 인건비는 농가가 부담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인력을 중개·알선

### □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인 : 농작업에 일손이 부족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농업인
- 일자리 구직자 : 신체 건강하고 농작업이 가능하신 분
- ※ 외국인 근로자는 불가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다문화 가정 등) 가능

### □ 언제 · 어디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첫회는 방문접수 필수, 2회부터는 전화신청 가능
  - 농업인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신청
    - 필요인력, 일정, 임금수준, 작업내용 등을 신청서에 기입
  - 구직자 : 일하고 싶은 지역의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신청
    - 희망작업기간, 희망임금, 차량필요 여부 등을 신청서에 기입
- (접 수 처) 군내 농촌인력지원센터 (2개소)
  - 장성농협 농촌인력지원센터(장성읍 청운2길 18) ☎ 394-5100
  - 삼서농협 농촌인력지원센터(삼서면 해삼로 1141) ☎ 399-1323

### □ 일자리 참여자에게 주는 혜택이 있나요?

- 상해보험 무상가입
- 교통비 지원
- 숙박비(관외자 등 지역에 거주 하지 않는 작업자) 지원

문의처 ☎ 390-8456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정책담당)

##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 동물보호법 개정( '18. 3. 22.)에 따라,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단독주택에서 영업 가능한 소규모 동물 생산업과
- 신규 서비스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니
- 해당 영업자께서는 신고기일내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팀 사무실 방문 영업허가(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물보호법상 영업에 해당되는 반려동물의 범위

-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고양이 · 토끼 · 페럿 · 기니피그 · 햄스터
- ※ 식용 또는 경비(방범)의 목적으로 기르는 가축은 해당없음

### □ 영업의 종류

- 소규모 동물생산업 : 단독주택에서 번식이 가능한 1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 ※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거리제한 지역은 허가 불가
- 동물전시업 : 애견카페, 동물카페 등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훈련소, 호텔, 유치원 등
- 동물미용업 : 동물미용실
- 동물운송업 : 펫 택시

### □ 허가(등록)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신규신청자) 수시 ※ 허가이후 해당 영업실시  
(기존영업자) 전화문의
- 제출서류 : 영업 허가신청서 등
-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팀 사무실

문의처 ☎ 390-8518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

## 철저한 범씨종자 소독으로 키다리병을 예방합시다!

### □ 일반재배 종자소독

#### ○ 범씨발아기 이용소독

- ① 물 20L + **키맨40ml** + 살충제20ml(다이아톤, 리바이젯드, 스미치온)를 범씨발아기 이용 물온도 32℃에서 2일간 소독 → 물로 2~3회 씻은 후 → 1~2일간 종자 담그기 → 싹틔우기 → 파종
- ② 물 20L + **스포탁10ml** + 살충제20ml(다이아톤, 리바이젯드, 스미치온)를 범씨발아기 이용 물온도 32℃에서 24시간 소독 후 → 세척 → **스위퍼 10ml 또는 사파이어 5ml**를 32℃에서 36시간 담그기 → 씻지 않고 싹틔워 파종

#### \* 정부보급종 소독종자 \*

소독된 보급종 + 살충제20ml(다이아톤, 리바이젯드, 스미치온)를 혼용 후 물온도 30℃에서 48시간 소독후 → 세척 → 상온에서 4~5일 침종 → 싹틔우기

\* 정부보급종은 수령할 때 **소독/미소독 종자 확인**. 소독종자는 붉은색

#### ○ 범씨발아기가 없는 경우

물 20L + **스포탁10ml** + 살충제20ml(다이아톤, 리바이젯드, 스미치온)를 48시간 담그기 → 세척 후 상온의 물에 48시간 담그기 → **스위퍼 10ml 또는 사파이어 5ml**를 48시간 담그기 → 무세척 최아작업 병행

### □ 친환경재배 종자소독 (유기, 무농약)

#### ○ 온탕소독

온탕소독기를 이용 60℃에서 10분, 65℃에서 7분간 침지 → 찬물에 30분간 식히기 → 발아기에서 3일정도 담근 후 → 싹틔워 파종

\* 주의사항 : 10분 동안 소독물 온도 유지

#### ○ 온탕소독 + **석회유황(22%)** 소독

온탕소독 후 (60℃ 10분) 찬물에 30분 담그기 → **석회유황(50배액)** 32℃ 24시간 처리 → 세척 → 최아 → 파종

\* 석회유황 약량 : 물 20L+석회유황 400ml    300L소독기+석회유황 6L

문의처 ☎ 390-8404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담당)

# 쌀 적정생산을 위한 3저(低) · 3고(高) 실천운동

3저  
(低)

재배면적 줄이기  
질소비료 2kg 줄이기  
생산비 줄이기

## 벼 재배면적 50천ha를 줄입니다

- 논에 타작물재배하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소득사례 : 콩+밀 · 보리(1,430천원/10a), 봄배추+콩(2,280천원/10a), 감자+콩(2,660천원/10a)

## 질소비료 10a당 2kg를 줄여서 줍니다

- \* 비료소비횟수 절감 : (관행) 3회 → (개선) 2회(새끼칠거름 생략)
-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단백질이 증가하여 밥맛이 떨어집니다.
-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병해충, 도복 등 피해 원인이 됩니다.

## 쌀 생산비 줄이는 기술을 실천합니다

- 무논점파 직파는 기계이앙에 비하여  
전체 노동시간은 23%, 총생산비는 10%, 경영비는 8%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 10a 당 노동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

(2015, 농식물부 자금물제고사업단)

구분	무논점파(A)	기계이앙(B)	절감효과(B-A)
노동시간(시간)	7.36	9.54	△2.18 시간(△23%)
비용 (천원)	총생산비	752.5	△75.3 천원(△10%)
	경영비	440.1	△38.2 천원(△8%)

3고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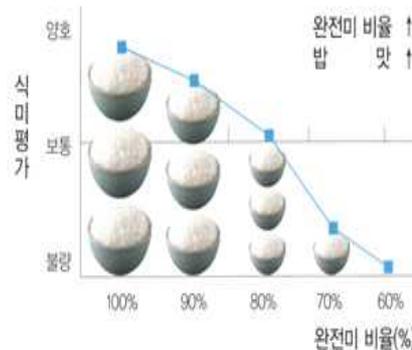
밥맛좋은 품종 재배하기  
완전미 비율 높이기  
쌀 소비 늘리기

## 다수성 품종보다는 밥맛 좋은 품종을 재배합니다

- 최고품질 품종으로 재배하면  
- 소비자가 선호하는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고  
- 쌀의 품질을 높이면 우리지역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완전미 비율 90% 이상 쌀만 판매 합니다

- 완전미 비율이 높으면 밥맛이 좋아집니다  
\* 완전미란 : 정상적인 쌀의 3/4이상 형태를 유지하는 쌀로써  
싸레기, 착색립, 피해립, 불안전 등숙립을 제거한쌀



## 다양한 쌀 가공제품 개발·보급으로 소비를 늘립니다

- 쌀가루 소비 신시장 개척으로 가공용 쌀 20만톤 소비
- 우리 쌀 변신은 무제한, 다양한 쌀가공제품
- 쌀은 새로운 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건강기능성

미용 등 산업용

문의처 ☎ 390-8404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담당)

## 과수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방제약제 신청하세요 !

### □ 돌발해충이란?

○ 돌발해충이란?

- 식물방역법 제2조 제5호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검역병해충
- 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어 천적이 없는 해충으로 밀도가 매년 증가추세

○ 돌발해충명 : 갈색날개매미충(증가속도 150배, 1마리당 1년에 150개 알 낳음)

○ 피해증상 : 잎·가지·과실 수액을 빨아먹고 배설물 분비로 과실 상품성 저하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4. 26. ~ 5. 4.(7일간)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과수 재배 농업인(감, 사과, 배, 복숭아, 베리류 등)

※ 2017년도 방제실적 : 939ha 1,266농가(사업비 : 78,367천원)

○ 지원기준 : 80,000원 내외/ha(보조 80%, 자부담 20%)

○ 약제살포방법 : 공동방제의 날 지정(5월하순~6월상순) 농가 자가방제

### □ 피해사진



알덩어리(현재)



약충(5월하순 알에서 부화)



성충(7월~10월 발생)

문의처 ☎ 390-8412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기술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분소 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성사무소가 개소하여 본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8년 담양·장성사무소로 통폐합된 후 20년만에 분리·증설된 것으로 그동안 농관원 사무소가 없어 많은 불편함을 겪어온 우리군 농업인에게 보다 신속한 농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개 요

- 개소일자 : 2018. 3. 30.
- 장 소 : 장성읍 청운2길 16(영천리 1048-13)



### □ 주요업무

-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
- 면세유류 관리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우수농산물 인증제(GAP)
- 원산지 관리, 안전성 조사, 품질검사 등

문의처 ☎ 394-6060 (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

## 2018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18. 4. 1. ~ 4. 30.(1개월간)

### □ 대 상

○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아래의 무기류

-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포,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난 구명총, 가스발사총 등 총포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등 화약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 그 밖의 무기류

※ 소지허가 미갱신자는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적 절차에 따라 갱신·허가 가능

### □ 신고요령

○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직접 또는 대리 제출

○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불법무기류 실물 제출 가능

※ 우편 접수 : (우편번호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  
무기류 신고담당자 앞(02-3150-1361)

※ 이메일 접수 : [sww@police.go.kr](mailto:sww@police.go.kr)

### □ 특 혜

○ 원칙적으로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가능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월부터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  
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399-4347 (장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등 관련 주요 위반사례**

▣ ‘선거운동’이란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통·리·반의 장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 포함)가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기간중(5. 31. ~ 6. 12)에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로 신고 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의 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를 증설하고 증설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선거운동기간중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착용 또는 휴대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팬클럽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게시하거나 퍼나르기 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상기 1~5 [별칙(법제255조제1항 제2·5·11·13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6.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명의를 게재[○○○(예비)후보자 정책특보 △△△]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7.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위촉장·임명장, 신분증 등을 수여 등을 하는 행위.  
 ☞상기 6~7 [별칙(법제255조제2항 제5호)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8.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공개장소연설대담·유세장 참석대가 포함)하여 금전(돈), 물품(선물 포함), 음식물(식사, 다과 포함) 기타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상기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포함)
9.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등에서 선거사무관계자(선관위에 등록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대신하여 선거사무를 보조하고 수당(금전)을 지급받는 행위  
 ☞상기 8~9 [별칙(법제230조제1항제4·7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393-2164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콜센터 1390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금지행위**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이하 같음)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행위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17. 11. 23.)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8. 5. 26)까지 19세 이상 선거권자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처벌규정 : 법 § 247①]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장전입 등 판단여부**

- 특별한 인구증가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급격이 늘어난 지역
- 전입자의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였거나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후보자의 가족, 보좌관·비서관·비서, 선거사무장 등 주요 선거사무관계자 위주로 위장전입 조사·확인대상자를 압축하여 조사·확인

문의처 ☎ 393-2164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콜센터 1390

### ③ 위반 사례예시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경우
- 거소투표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경우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④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벌칙규정]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 됩니다.

문의처 ☎ 393-2164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콜센터 1390

## 거소투표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8. 5. 22. ~ 5. 26.(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통합자료실(선거자료)』 메뉴의 ‘선거정당정치자금’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주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8년 5월 26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8년 5월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394-1390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5. 21. 이전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 23. 이후 신고**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2. (화)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① 2018년 5월 22일(화)[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2018년 6월 13일(수)[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 8일 ~ 9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①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①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① 준 비 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 새 학기 부정청탁금지법 Q&A



# 진술조력인, 아동·장애인의 인권 도우미



말해봐. 어린이집 선생님이 많이 때렸어?

저 잠깐만요, 어머니



아이가 겁을 먹고 얘기를 제대로 못하니 어떡하죠?

심리적 불안감으로 진술을 힘들어할 수 있어요. 곧 진술조력인이 오니까 그 때 하면 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엄마인 저에게도 말을 못 하는데 진술조력인이라곤 분이 온다고 달라질까요?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성 있는 분이시니 진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임상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특수교육, 언어치료, 수화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등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해서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걱정 마세요.



근데 그거 혹시 비용이 얼마나...?

무료입니다.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에 만 13세 아동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어느 분이시죠?

아 오셨군요.



진술조력인은 범죄 피해 아동, 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입니다.